

#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제한물질 취급 시 신고의무 안내

○ 「화학물질관리법」이 2025년 8월 7일부터 개정·시행 됩니다.

	개정 前	개정 後
유해 화학 물질 정의	○ 유독물질, 허가물질, <b>제한물질</b> 금지물질, 사고대비물질 등	○ 인체급성유해성물질, 인체만성유해성물질, 생태유해성물질, 사고대비물질 <i>* 제한물질 허가물질 금지물질 별도 구분관리</i>
관리 체계	○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	○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○ <u>제한물질의 취급 신고(신설)</u> 이하 생략

※ 화학물질관리법 개정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

○ 법 제18조제5항에 근거하여 제한물질을 제한되지 아니한 용도로 제조·수입·판매·보관·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

※ 법 제18조(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) ⑤ 제한물질을 제한되지 아니한 용도로 제조·수입·판매·보관·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24. 2. 6.>

○ 제한물질로 지정된 13종의 화학물질 중, 크로뮴(6+)화합물[Chromium(6+) compounds; 18540-29-9]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제한되지 아니한 용도로 제조·수입·판매·보관·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, 개정법이 시행되는 2025년 8월 7일에 맞추어 불임의 신고서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○ 그 외, 유해화학물질이면서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은 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을 받은 경우 법 제18조5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신고를 면제하고 있습니다.

※ 시행령 제8조의2(제한물질의 제조·수입 등 신고의 면제 대상) ... 4.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제한물질을 제조·판매·보관·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가.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가 수리된 경우...후략.

○ 해당 제한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신고 의무 등을 양지하여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

**붙임**

**제한물질(제조, 판매, 보관·저장, 수입, 사용) 신고서(신설(안))**

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15호의2서식]

제조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 수입  
**제한물질**    판매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**신고서**  
 보관·저장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 사용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발급일	처리기간 7일
------	------	-----	------------

신고인	상호(명칭)	사업자등록번호
	성명(대표자)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
	주소(사업장)	(전화번호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

신청사항	① 제품명(상품명)			
	② 제조국(수입국)			
	③ 주요 용도			
	④ 연간 예정량	kg		
	⑤ HSK No.			
	수입 제품 (상품명) 정보	⑥ 모델·규격		
	제한물질 함유 내용	⑦ 명칭		
		⑧ 고유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(CAS No.)		
		⑨ 함유량(%)		
자료보호 신청 여부	[ ] 해당      [ ] 해당없음			

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의

제조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 수입  
 판매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을 신고합니다.  
 보관·저장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 사용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신고인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서명 또는 인)

유역(지방)환경청장 귀하

